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제정의무]

제5조 [적용 및 의무]

제2장 등록자격심의위원회

제6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제7조 [기능]

제8조 [조직]

제9조 [운영]

제3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제10조 [선수등록]

제11조 [지도자등록]

제12조 [지도자 등록자격]

제13조 [체육동호인등록]

제14조 [선수등록의 예외]

제15조 [선수등록 구분]

제16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17조 [등록시기]

제18조 [선수 등록자격]

제19조 [지원서의 관리]

제20조 [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제21조 [등록절차]

제22조 [등록지]

제23조 [등록변경]

제24조 [이중등록]

제25조 [선수구제]

제4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26조 [지도자활동의 자격]

제27조 [선수활동의 자격]

제28조 [선수활동의 제한]

제29조 [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제30조 [선수 실적발급]

제5장 징계조치

제31조 [제한조치]

제32조 [위반자 조치결과]

제6장 부칙

제33조 [시행]

제34조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은 본 협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자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의 당해 종목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등록"이라 함은 본 협회의 동호인으로 동호인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선수"라 함은 본 협회의 당해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등록지도자"라 함은 본 협회의 당해 종목 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6. "등록체육동호인"이라 함은 본 협회에 가입된 동호인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당해 가맹단체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도자활동"이라 함은 지도자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활동"이라 함은 동호인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회원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가맹단체로서 정가맹단체 또는 준가맹단체로 승인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12. "체육특기자"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 선수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 받는다.)

13.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14.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5.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적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7.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본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8.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19. “체육동호인”이라 함은 성인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0. “청소년체육동호인”은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1. “지도자·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제정의무] ① 본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야구·소프트볼 종목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지도자나 선수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적용 및 의무]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과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 국적자의 지도자·선수등록에 대하여는 국제연맹 규정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다만,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체육회가 인정하는 종목에 한한다.)

④ 야구종목에 등록한 팀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시 대회 출전 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야구종목 전국대회 참가팀 수는 회원단체별 등록팀 수 기준으로 초등·중등부는 4

팀당 1팀, 전년도 우승팀 1팀, 개최지 2팀으로 한다.(초등·중등부 등록팀이 3팀 이하의 경우에도 1팀 출전으로 한다.)

제2장 등록자격심의위원회

제6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협회 정관 제37조에 의거한 전문위원회로서 등록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7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조정한다.

- ① 지도자·선수등록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지도자·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지도자·선수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④ 아마추어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⑤ 규정위반자 조치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

제10조 [선수등록] ①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반부(실업팀) 및 제14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한다.

제11조 [지도자등록] ①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지도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지도자등록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입시비리, 승부조작, 금품수수(이하 “입시비리 등”이라 한다)에 연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다만, 입시비리 등과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받은 경우에는 전체 범죄를 입시비리 등으로 본다.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0.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본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
12. 본 협회와 회원단체 및 프로기구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협회의 추가 확인 요청시, 지도자는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②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등록이 추후 발견되었을 시 해당자는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된다.

⑤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등록금지,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⑥ 프로(구단)에 입단했던 사람(선수·코치·감독)이 본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회의 자격심의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1) 프로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프로의 감독·코치를 역임한 사람

단, 프로선수 경력이 5년 미만인 자도 본 협회에 등록할 수 있으나 고교·대학의 경우 코치에 한하며, 해당자가 만 3년 이상 본 협회에 등록한 경우 모든 학교급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해당 시·도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KBO 총재가 추천한 사람

단, 프로기구에서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자 등록 자격]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구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베이스볼아카데미 수료증 소지자

가. 베이스볼아카데미 수료자의 등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소년, 중학 지도자 : 인스트럭터 코스 이상 수료자

2) 고교, 대학 지도자 : 리더 코스 이상 수료자

② 소프트볼

1. 2급 이상 소프트볼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단, 2020년부터 적용한다.)

③ 스포츠클럽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야구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유소년·노인 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④ 야구·소프트볼 부장은 당해 교육청에 등록된 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제13조 [체육동호인등록] ①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 협회의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청소년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협회에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 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재직 중에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사람은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사람은 재직 중에 대학소속으로 등록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장운동부 소속만을 말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선수등록 구분]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단,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부(13세 이하)
2. 중학부(16세 이하)
3. 고등부(19세 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7. 리틀부
8. 스포츠클럽부

②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③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15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등록신청서 제출 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등록시기] 등록은 정기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② 추가등록은 세부종목(야구·소프트볼·체육동호인)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야구종목은 신인선수와 신설팀·초등·리틀·대학·체육동호인·스포츠클럽·일반부 선수는 수시로 추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중학·고등부 선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

2. 소프트볼종목·체육동호인은 시기에 상관없이 추가등록 할 수 있다.

③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④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반드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선수 등록자격] ① 선수 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사람(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한 사람을 포함하여 4년제 대학 선수는 총 12학기까지, 2년제 대학 선수는 총 6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본 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사람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사람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사람

③ 본 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중 졸업학년도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협의 또는 가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의 자격을 즉시 유보하고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서의 관리]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1명 당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② 학교 팀의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 또는 동일 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 중인 사람과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 동안 해당 학교급 또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④ 군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선수는 예외로 한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13조 제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⑦ 동일인이 제15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가맹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본 협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⑧ 유급 및 재수 사실이 2회 이상이거나 유급 후 1년이 경과 또는 재수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익년도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⑨ 등록자격 제18조 3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⑩ 프로에 입단 또는 등록하였던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국군체육부대는 예외로 한다.)

⑪ 실업팀은 외국적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취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⑫ 이 규정과 본 협회의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21조 [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며 시·도체육회는 시·도 가맹단체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서 체육동호인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팀 전원이 포함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부를 4부 작성하여 회원단체에 제출하고 회원단체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시·도 체육회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2부를 제출한다. 단, 소프트볼종목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팀 전원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카드를 포함한 소속팀 전원이 포함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시·도 회원단체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도체육회에서는 제출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본 협회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체육회에 확인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②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의 효력은 등록서류를 본 협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단, 등록서류를 회원단체에 제출한 자는 심사 확인을 받을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④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본 협회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마감일로부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등록시 감독이 없는 팀은 등록을 유보하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야구종목에 등록한 팀 중 선수가 부족한 팀은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등록 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년을 유보하는 경우 팀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야구종목에 등록한 팀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미등록팀은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야구종목에 등록한 팀 중 해체된 팀은 2년 내에 재창단할 수 없다.

제22조 [등록지] 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은 해당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회원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사항 변경은 자격심의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변경·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가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평정위원회가 승인한 사람

3.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 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정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까지는 전 소속단체 소속으로 한다.

7. 야간 대학선수의 경우 재학 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 선수가 재직 중 야간 대학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③ 야구종목 대학부 선수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소속팀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 등록을 말소하고 소속 팀의 단체장(총장, 학장) 동의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본 협회에 등록팀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변경 승인 후 만 2년간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중등록] 이중등록자는 쌍방 무효로 하고 부당하게 이중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본 협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협회는 즉시 심의하여 부당 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 협회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 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26조 [지도자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야구·소프트볼·스포츠클럽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지도자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지도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야구·소프트볼·동호인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단, 각급 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초등부·리틀부에 등록된 이력은 선수활동 제한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⑥ 야구종목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1. 선수활동 제한기간은 표에 명시된 기준으로 산정된다.

선수활동 제한기간	세부내용	학교급	비고
1년	▪ 타 시·도 이적	중학·고등부	
6개월	▪ 동일 시·도 이적 ▪ 타 시·도 이적 시 동일학교급의 등록팀 수가 적은 시·도로 이적	중학·고등부	특수학교가 등록된 시·도의 경우는 선수활동 제한기간 산정시 등록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개월	▪ 타 시·도 이적 ▪ 동일 시·도 이적	초등부만 해당	

*** 공통사항 : 기존 재적학교장의 이적동의서 첨부 필수**
제한기간 산정은 이적팀에 전입한 날로부터 산정

2. 창단팀의 경우는 창단일로부터 1년간 제28조 6항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3. 등록 선수 수가 25명 미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 선수를 포함한 등록선수 수가 25명이 될 때까지 제28조 6항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등부는 매년 전국체육대회 종료 시점(10월)을 기준으로 익년도에 졸업이 예정된 선수(유급선수 등 익년도에 동일팀에 선수로 등록할 예정인 선수는 제외)는 등록 선수 수 산정시 제외한다.

4. 중·고교에 등록한 선수가 졸업학년도에 등록 팀을 변경한 후 유급을 하였을 경우 복학년도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5. 본 협회에 등록된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소속 학교에서 휴학한 경우, 해당 선수는 휴학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모든 대회(시·도 협회 주최, 본 협회 주최 및 주관)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휴학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 회원단체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그 연도에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사람

2.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사람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거나 해당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사람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학생선수 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으로 입원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2. 소속단체의 해체

3.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 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사람(단, 본 협회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 시 본 협회가 정한 선수등록 기한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

제30조 [선수 실적발급] 선수 실적발급은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에 따른다.

제5장 징계조치

제31조 [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위반한 사람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보호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 협회의 활동 자격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의뢰(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만료 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본 협회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32조 [위반자 조치결과]

①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제정]

1. 2017년 제2차 이사회(2017. 7. 18)